

의안번호	2211358
의 퇴 인	김위상 의원
회 답 일	2025.9.2.
추계번호	25B3675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28조(근로복지시설 설치·이용 등의 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근로복지시설을 이용하는 노동단체, 비영리법인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의 이용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거나 시설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여야 함(제5항 신설)	의무규정

II.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미첨부 근거 규정
1	안 제28조(근로복지시설 설치·이용 등의 지원)	×	• 미첨부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본문 참조

2. 상세 사유

- 개정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근로복지시설을 이용하는 노동단체, 비영리법인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의 이용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거나 시설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도록 법률에 규정하는 내용이므로, 개정안의 시행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변화가 발생할 수 있음
 - 개정안의 시행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재정의 지출증가분은 장래에 추진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규모에 따라 달라지는데 현시점에서 이를 추정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며, 이에 대한 재정지원 규모도 예산의 범

위로 유동적이므로 장래에 발생할 추가재정소요를 예측하는 데 한계가 있음

- 고용노동부 제출자료에 따르면, 현재 고용노동부는 「근로복지기본법」 제28조에 근거하여 별도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 않으며,¹⁾ 개정안의 시행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근로복지시설을 이용하는 노동단체, 비영리법인 등에 대해 시설 이용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기 위한 신규 사업이 추진될 가능성이 있으나 현시점에서 장래에 발생할 사업 추진 규모를 합리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움
- 또한, 개정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시설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이므로, 개정안의 시행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입이 감소할 수 있음
 - 개정안의 시행에 따른 수입감소분은 장래에 발생할 시설 사용료의 면제 규모에 따라 달라지는데, 면제요건·면제 대상 시설·면제 금액 등 구체적인 내용이 정해지지 않아 현시점에서 이를 합리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움
 - 참고로, 경기도의 경우 「경기도 노동자 복지증진과 복지시설지원에 관한 조례」²⁾를 통해 복지시설의 각종 시설에 대해 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노동자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³⁾에 따라 노동자복지시설을 사용하려는 자에게 사용료 및 이용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표 1] 서울특별시 노동자복지시설 이용료

명 칭	시설명	기본 이용시간	금액(원)	비고
서울특별시 노동자복지관	강당	2시간	80,000 ~ 150,000	· 냉난방 이용 금액 포함 · 음향 기본 장비 필요 시 제공 · 1회의 기본 이용시간은 2시간으로 하며, 2시간 미만 이용은 기본 이용시간 이용으로 간주함 · 기본 이용시간 초과 시 이용금액을 시간당 단가로 추가 징수함
	소강당	2시간	60,000 ~ 120,000	
서울특별시 강북노동자복지관	강당	2시간	80,000 ~ 150,000	
	회의실	2시간	40,000 ~ 80,000	

자료: 「서울특별시 노동자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별표 2]

- 1) 참고로, 지방의 근로복지시설을 확충하기 위하여 추진하였던 근로자종합복지관 건립 지원사업은 2014년 분권교부세 폐지에 따라 종료됨
- 2) 「경기도 노동자 복지증진과 복지시설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사용료 등의 부과) 도지사는 복지시설의 각종 시설에 대해 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다. 사용료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칙으로 정하여 시설과 인터넷에 공개하여야 한다.
- 3) 「서울특별시 노동자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사용료 등) 시장은 노동자복지시설을 사용하려는 자에게 사용료 및 이용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료는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에 따라 산정하고, 이용료는 별표2의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한다.

Ⅲ. 부대의견

☐ 없음

Ⅳ.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경제비용추계과	남 희	김신애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남 희	02-6788-3737	nhee@nabo.go.kr

[참고자료 I] 서울시 노동자복지관 사업개요

(서울특별시 제출자료)

□ 사업개요

- 운영근거
 - 「근로복지기본법」 제28조, 「지방자치법」 제161조
 - 「서울특별시 노동 기본 조례」 제10조 제1항
 - 「서울특별시 노동자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제6조
- 운영목적
 - 근로자의 직업안정 및 고용촉진 등 경제·사회활동 참여기회 확대
 - 문화·체육 활동 지원을 통한 근로의욕의 증진 및 삶의 질 향상
- 추진방식: 민간위탁

시설명	서울특별시 노동자복지관	서울특별시 강북노동자복지관
소재지	영등포구 영등포동 7가 57	마포구 아현동 711-2
시설규모	연면적 3,768.24㎡(지하1층~지상6층)	연면적 2,773.33㎡(지하1층~지상5층)
소유자	서울시(노동정책과)	
개관일	1992. 11. 13.	2002. 3. 28.
최초위탁일	1992. 9. 25.	2002. 8. 7.
수탁자 (대표자)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서울지역본부	재단법인 피플
위·수탁기간	2023. 9. 25. ~ 2025. 9. 24.(12차)	2023. 9. 25. ~ 2025. 9. 24.(1차)
위·수탁사무	(복지관 공통) 노동자복지관 시설물 유지·관리, 문화·체육·직무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서울 복지관) 노무·법률 상담 등 노동자 권익 보호, 재취업 아카데미 등 직업 안정 및 고용 촉진 (강북 복지관) 감정노동자 치유 프로그램(아로마 향기, 동물교감, 명상, 산림치유, 숲길걷기 등)	

□ 수입현황

- 「서울특별시 노동자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사용료 등)에 따른 수입 현황

[표 5] 수입 현황

(단위: 백만원)

시설명	2021	2022	2023	2024	2025
서울특별시 노동자복지관	—	—	7	36	45
서울특별시 강북노동자복지관	—	5	19	83	92
합계	—	5	26	119	137

자료: 서울특별시

[참고자료 Ⅱ] 경기도 노동자복지시설 사업개요

(경기도 제출자료)

□ 사업개요

- 운영근거 : 「근로복지기본법」 제28조, 「경기도 노동자 복지증진과 복지시설지원에 관한 조례」 제14조
- 예산액 및 사업내용
 - － 예산액 : (2025년) 1억원(도비 100%)
 - － 사업내용 : 노동복지센터 관리·운영 (인건비 및 운영비)
- 추진방식 : 민간위탁(공모), 신규 수탁기관 민간위탁 추진 중
- 시설현황
 - － 시설명 : 경기도 노동복지센터(경기도 수원시 경수대로 566)
 - － 시설규모 : 대지면적 661㎡, 연면적 3,642.46㎡ / 지상5층, 지하3층
 - － 주요시설 : 다목적 강당, 회의실·강의실, 사무실 등
- 민간위탁업무
 - － 노동복지센터 시설 전반(부대시설 포함) 유지·관리 운영
 - － 노동자 권익보호 및 역량 강화를 위한 노동 상담·교육 프로그램 운영
 - － 노동자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인식 개선 활동
 - － 노동 기관·단체간 협력사업
 - － 그 밖에 도민과 노동자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 수입현황

- 경기도 노동자 복지증진과 복지시설에 관한 조례 개정(2024.6월)을 통해 위탁료 수입액 산정 근거를 명시하였으며, 조례 개정 이전 체결된 「경기도 노동자 복지센터」 기존 수탁기관과의 위수탁협약서 제5조(운영비) '무상사용' 규정에 의거 별도 사용료 징수하지 않고 있음
- 경기도 노동자복지센터 위수탁계약기간의 만료(2025.8월)에 따라 현재 신규 민간위탁 절차를 진행 중으로 향후 위수탁협약서에 사용료⁴⁾ 관한 사항 명시하여 추진할 계획임

4) 참고로 2025년 기준 개별공시지가 및 시가표준액에 따른 노동복지센터 사용료는 ㎡당 101,228원임